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제외 대상 명시(안 제2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대상에서 개인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사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

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서식 (안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별지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5. ~ 12. 5.) 예정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회계연도 안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 ----- ----- ----- -----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회계연도 안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생략) <신설>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별 보조금 증감 및 자산 내역

□ 지방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 내역

지자체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수행기간	예산액	20XX년													차기 이월분 (D= A+B-C)	
					전기 이월분(A)	증가(B)						감소(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 지방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 내역

지자체명	세부사업명	면적	소재지	20XX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